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노인복지시설 - 노인일자리사업	3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	3
정의	3
목적	3
참여대상	3
사업근거	3
노인일자리사업 주요 유형	3
노인일자리 수행	4
노인일자리 참여방법	4
참여자 선발기준	4
선발제외	4

노인인구현황	노인복지정책	노인복지시설	장사문화
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

· 노인여가복지시설	· 노인의료복지시설	· 재가노인복지시설	· <u>노인일자리사업</u>
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

정의

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하고자 정부·지방자치단체·한국노인인력개발원·민간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운영주체가 되어,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"노인적합형 일자리"를 창출·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, 사회참여 확대,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요 노인복지사업

목적

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, 일자리,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

참여대상

- 공익활동·재능나눔활동 :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*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수급자만 가능
- 시장형 :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

사업근거

- 노인복지법 제23조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-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·보급과 교육훈련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법인·단체등에 위탁할수 있음
-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 :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· 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부담
-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

◎ 노인일자리사업 주요 유형

유형	정의	일자리 예시
공익활동	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	노노케어(취약노인 안부확인, 생활상태 점검등), 보육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16개 프로그램
재능나눔활동	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고,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 유도	취약노인발굴·지원, 학대노인 예방·지원, 노인이용시설 안전관리, 노인문화복지활동, 복지정책홍보 등 기타 노인권익증진 활동
시장형사업단	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	장류·김부각·두부과자·양파즙·한과·천연조미료 등 제조 판매, 아파트·지하철 택배, 쇼핑백제작, 콩 등 농산물 재배

시장 형	인력파견형 사 업단	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된 업무능력이 있는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 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	시험감독관, 주유원, 주사, 기사, 도우미, 건물관리, 경 비 등
	시니어인턴십	노인이 기업에서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	상점판매원, 물류관리, 주유원, 차량관리원, 고객상담, 홀 서빙 등
	고령자친화기 업	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 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	(주)고을, (주)Delicious Plan, (주)6088식품, (주)천 년누리, (주)타리서치코리아 등

노인일자리 수행

-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
- 군청, 노인복지관, 시니어클럽,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, 종합사회복지관, 노인복지센터, 지역문화원, 지자체 전담기관(실버인력뱅크) 등

노인일자리 참여방법

- 각 읍·면(군) 또는 수행기관(모집기관)에 관련서를 제출 및 상담
-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(자필서명),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등 수행기관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
- 참여자선발(시·군·구 또는 수행기관) :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(사회보장시스템, 새누리시스템)을 통한 국민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(공익활동은 시·군·구 최종선발)
- 사업참여 :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 수행

참여자 선발기준

유형		선발공통기준
공익활동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(시장형은 만 60세 이상) ▪ 건강상태 : 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 가능 ▪ 세대주형태 :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▪ 직업이 없는 노인
재능나눔활동		
시장형(취창업)	시장형사업단	
	인력파견형 사업단	
	시니어인턴십	
	고령자친화기업	

선발제외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: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차명가능 (단, 시장형 사업단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허용)
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)
-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등급)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 (예) 안전행정부 희망근로사업,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
COPYRIGHT © GANGJIN-GUN. ALL RIGHT
RESERVED.

GANGJIN

Web Contents

